

제 353 호

1973. 3. 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편집 : 공보실 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시보

차례

차례

이 영광으로서는 그만이었고
필름으로 그만이었다.

1973. 3. 14

◎ 소례	제 753 호 서울특별시 영동제2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3
	제 754 호 서울특별시 영동제2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7
	제 755 호 서울특별시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8
	제 756 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13
	제 757 호 서울특별시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 분담금 부과 징수조례 13
◎ 공고	제 41 호 환지예정지 변경 신고 15
	제 45 호 화양추가지구 환지계획 공람 15
◎ 공인승인서 16
◎ 사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19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동제2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3월 13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753 호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제 2 지구 및 영동추가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구의 범위) 이 지구는 영동제 2 지구 및 영동추가지구획정리지구라 칭하고 사업시행지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담, 신사, 암구정, 학현, 봉현, 삼성, 역삼

대치, 도곡, 방배, 사당, 서초, 우민, 양재동등 4,466,829 평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및 영동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에 의한 분담금으로 보충한다.

제 4 조 (종전토지) 환지 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필의 면적은 법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여 별도로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 5 조 (평정가격) 정리전후의 토지 각필의 평정가격은 그 위치, 형상 면적, 고처, 간습, 교통, 환경 등을 참작하여 시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토지의 사용)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 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자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증명 및 분할) ① 시장은 사업기간 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재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종전 토지 및 환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 9 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이 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방법에 의하고 법 제 48 조 내지 제 51 조, 제 53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근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 3 항 내지 제 7 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위치근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

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이 있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전불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 3 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전불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 보다 증환지된 면적은 제 5 조에 의한 정리후의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

⑥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에 규정한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면적은 전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 한다.

⑦ 기준전 불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

<p>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건물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연도부담은 1/2를 감할 수 있다.</p> <p>⑧공통부담은 종전의 토지의 형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황과 지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데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지 : 공부상 대(垈) 또는 기존건물이 점유한 토지 2. 2급지 : 공부상 전(田)인 토지 3. 3급지 : 공부상 담(畜), 임(林) 및 기타 토지 <p>⑨도시계획상 자연공원으로 책정된 청담, 봉은, 삼농공원용지는 감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삼농공원 내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부근의 동등한 위치에 환지를 정한다.</p> <p>제 10조 (특별지의 환지계획) ①종전 토지의 적적이 65m에 미달되거나 또는 평정가격이 근소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p>	<p>사업의 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90m미만으로 환지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환지 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11조 (환지예정지지정) 법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 12조 (가환지예정지지정) 기존건물이나 공작물의 이전 또는 법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행위가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조의 환지예정지 지정전에 가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 13조 (청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가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p> <p>제 14조 (청산기준)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p>
---	--

<p>환자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자면적과의 차이에 환지평정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 할 수 있다.</p>	<p>도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때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이자를 가산한다.</p>	<p>제 18조 (대리인계출) 당해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차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15조 (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일부 완료지역 또는 사업종결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종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p>	<p>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환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 19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명의 신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p>
<p>제 16조 (체비지의 책정 및 관리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시가지 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p>	<p>제 20조 (토지소유자의 자비공사) ① 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비로 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p>
<p>제 17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 65 조에 의한 족탁등기 절차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환지확정지정서 및 환지설명서의 초본을 첨부하여</p>	<p>② 전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통부담을 1급지 (대지)로 적용할 수 있다.</p>
	<p>제 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이 사업시행실시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p>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동제 2지구 및 영동추 가지구토지구획정리 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1973년 3월 13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754 호

서울특별시 영동제 2지구 및

영동추 가지구토지구획정리

분담금부과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27 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제 2지구 및 영동추 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이하 「구획정리」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구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지소유자로 부터 분담금을 부과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과총액)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구획정리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지출될 일체의 경비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부과금액은 법시행령 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보조금

2. 체비지 (보류지) 매각대금

3. 기타수입

제 3 조 (분담금부과기준) ① 분담금은 구획정리인가전과 환지지정 당시의 토지 평정가격의 증차액 또는 환지지정 면적의 종전 지목별 차등에 의하여 부과한다. 종전 토지 평정가격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한 부동산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등적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환지처분시에는 노선가산출방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분담금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분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공

하였을 때.

2. 구획정리를 위하여 노력이나

불체를 제공하였을 때.

제 5 조 (납입방법) 분담금의 부과시
기, 납입기간, 납입방법, 납입장소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 6 조 (체납처분) 분담금을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7 조 (결산)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결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
는, 분담금을 주정하거나 또는 공
공이익을 위하여 제공사 할주 있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
리사업시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택 식

1973년 3월 1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55 호

서울특별시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양추가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부담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구의범위) 이 지구는
화양추가지구구획정리지구라 칭하
고 사업시행지구의 범위는 서울
특별시 성동구구의동, 자양동등
460, 588 평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
과 잠실지구에서 전입되는 전입
금 224백만원으로 충당함을 원
칙으로 하고 이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에 의한 분담금으로 보충한다.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재증명서를 신청에 의하 여 발급할 수 있다.
제 4 조 (종전 토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각 필의 면적은 법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 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여 별도 로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 을 정한 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② 종전 토지 및 환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 5 조 (평정가격) 정리전후의 토지각 필의 평정가격은 그 위치, 형상, 면 적, 고저, 간습, 교통, 환경 등을 참작 하여 시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이 지 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방법에 의하고 법제 48 조 내지 제 51 조, 제 53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 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근처에 지정함 을 원칙으로 하며 제 3 항 내지 제 7 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토지의 사용) 시장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 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위치근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 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제 7 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지예정 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이 있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
제 8 조 (증명 및 분할) ① 시장은	

<p>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 법 제 3 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 보다 증환지된 면적은 제 5 조에 의한 정리후의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p> <p>⑥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에 규정한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 기간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p>	<p>증환지 면적은 전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p> <p>⑦ 기존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채정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건물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을 다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연도부담은 $1/2$ 를 감할 수 있다.</p> <p>⑧ 공통부담은 종전의 토지의 형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황과 지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1급지 : 공부상 대(垈) 또는 기존건물이 점유한 토지</p> <p>2. 2급지 : 공부상 전(田)인토지</p> <p>3. 3급지 : 공부상 탑(畠), 임(林), 잡종지(雜種地) 및 기타토지</p>
---	---

(9) 체신부 국제 송수신 철탑(이하 "광장 수신소"라 한다) 용지는 감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광장수신소용지내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부근의 동등한 위치에 환지를 정한다.

제 10 조 (특별지의 환지 계획) ① 종전 토지의 지적이 65m에 미달되거나 또는 평정 가격이 근소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90m 미만으로 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법상의 용도지역에 치속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환지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기준 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환지 예정지 지정) 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2 조 (가환지 예정지 지정) 기존 건물이나 공작물의 이전 또는 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행위가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조의 환지 예정지 지정전에 가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청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가정 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나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 14 조 (청산기준)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환지 평정 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산금을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때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이자를 가산한다.

제 15 조 (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일부 완료지역 또는 사업종결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중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p>② 환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 16 조 (체비지의 책정 및 관리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시가지 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p>	<p>제 19 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명의신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자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p>
<p>제 17 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제 65조에 의한 촉탁등기 절차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환지확정지정서 및 환지설명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20 조 (토지소유자의 자비공사) ① 법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비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통부담을 1 급지 (대지)로 적용할 수 있다.</p>
<p>제 18 조 (대리인제출) 당해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p>	<p>제 21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이 사업시행 실시 일로부터 시행한다.</p>

1973.3.14.

19-13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1973년 3월 1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56 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 등징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법제 26 조"를 "법제 25 조"로, "법제 27 조"를 "법제 26 조"로, "법제 29 조"를 "법제 33 조"로 한다.

제 2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제 4 호 중 "고시가격"을 등록세 법에 의한 인근 유사토지의 시가 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동 단서 중 "고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 7조 단서 중 "단 범 제 58 조"를 다만 범 제 67 조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 을 "별표"로 하며 동표 점용요금란중 "고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동표 4 의 점용요금란중 "1㎡당 세사 50원, 왕사 80원, 자갈 70원"을 "수요지의 시가에서 채취비,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3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화양 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1973년 3월 1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57 호

서울특별시화양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27 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양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지소

유자로 부터 분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과총액) 분담금의 부과 총액은 구획정리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지출될 일체의 경비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금액은 법 시행령

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보조금

2. 체비자 (보류지) 대각 대금

3. 기타 수입

제 3 조 (분담금부과기준) ① 분담금은 구획정리인가전과 환지지정 당시의 토지평정가격의 증차액 또는 환지지정 면적의 종전 지목별 차등에 의하여 부과한다.

종전 토지평정가격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한 부동산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통직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환지차분시에는 노선가산 출방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분담금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공하였을 때
2. 구획정리를 위하여 노력이나 물체를 제공하였을 때.

제 5 조 (납입방법) 분담금의 부과시기, 납입기간, 납입방법, 납입장소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체납처분) 분담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함 때에는 국세 및 자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7 조 (질산)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결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분담금을 추징하거나 또는 공공이 익울 위하여 제공사 할 수 있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41 호

환지에 정지변경 공고

1. 당시 시가 시행중인 영동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지구발전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환지에 정지 일부를 변경하고자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1과에 비치하고 있으나,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2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며 미 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73. 3. 12.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45 호

화양추가치구 환지계획공람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화양추

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6조와 동법 제 47조 및 서울특별시 화양추가치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도서와 같이 성동구 구의동, 자양동 각 일부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관계 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1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공 람 개 요

1. 사업명 : 화양추가치구획정리 사업
2. 사업집행지 : 성동구구의동 및 자양동 각 일부 지역
3. 시행면적 : 460, 588평

1973. 3. 14.

서울특별시장

19-16 제 353 호

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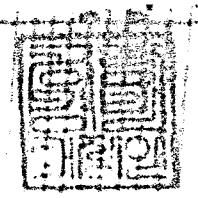
1973.3.14.

공인의신조신청서

수신 서울특별시장

1973. 3. 7.

신청인 서울특별시경찰국장

1. 이 유	내무부기획 151-1096(73.2.12)에 의거 공항경비대신설
2. 서체 및 규격	전자체, 2.1센치미터 정방형
3. 공인명	공항경비대장인
4. 사용개시	73. 3. 7. 00 : 00
5. 비치처 및 간수자	공항경비대 행정계 행정계장
6. 공인의 모형	

제 353 호

시 보

1973.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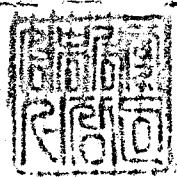
19-17

공인의 신조신청서

수신 서울특별시장

1973. 3. 7.

신청인 서울특별시경찰국장

1. 이 유	공인의 마멸로 개각
2. 서체 및 규격	전자체, 2.1센치 미터 정방형
3. 공인명	성북경찰서장인
4. 사용개시	73. 3. 7. 00:00
5. 비 치처 및 잔수자	성북경찰서경무과, 경무과장
6. 공인의 모형	

1521

18-16

214

19-18 제 353 호

시 보

1973.3.14.

공인의 신조신청서

수신 서울특별시장

1973. 3. 7.

신청인 서울특별시경찰국장

1. 이유	대통령령제 6367호(72. 10. 25)에 의거 남부경찰서 신설
2. 서체, 규격	전자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인명	남부경찰서장인
4. 사용개시	73. 3. 7. 00:00
5. 비치서 및 간수자	남부경찰서경무과, 경무과장
6. 공인의 모형	

제 353 호

시

보

1973.3.14.

19-19

사 령

◎ 1973. 3. 13.

오류부녀보호
지 도 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3. 3. 14.

마포병원
73. 5. 10 까지 의약과 (의무
실) 파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건축기사보 박명국
지하철 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기사보 최상운
역청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토목기사보 이덕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